



제418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6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신설	2
2. 청년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능력개발·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 ⑨ (생략)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	---

□ 현행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¹⁾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 기

- 1)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이전의 기본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하여 환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그런데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님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은 청년 영향평가의 대상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예산제도와 연계 없이 영향평가 만을 실시²⁾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청년기본법」 제9조제 3항에 따라 현재도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년 영향평가가 신설될 경우 평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및 평가 주체인 국가·지자체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2)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청년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의무화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지급액 결정방식·지급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청년 기본소득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촉진을 위하여 청년에게 기본소득(이하 “청년기본소득”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한다. ③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청년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년 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15세~64세 전체 고용률은 62.6%, 실업률은 2.7% 수준인 반면, 15세~29세의 고용률은 46.5%, 실업률은 5.9%로 고용 지표면에서 취약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23년 40.1만명³⁾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음.

○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건전성 조사에서도 39세 이하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의 복지 증진, 주거 지원, 금융생활 지원 등 청년의 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자산형성을

3) <최근 10년간 15~29세 쉬었음 인구 수>

(단위: 천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75	307	269	299	313	360	448	418	390	401

(자료: 통계청)

4) <2023년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단위: %)

구분	부채/자산	금융부채/저축액
39세 이하	29.6	140.1
40~49세	22.3	100.1
50~59세	17.7	65.9
60세 이상	11.3	47.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5)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지급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정 연령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 분기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의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제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소득법안」⁶⁾, 제21대 국회에서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⁷⁾ 등 청년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에게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성격의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 예컨대,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6)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5333호

7)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138호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음.

□ 특정 연령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청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청년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매 분기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 재원 조달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근거 신설 시의 재정 소요⁸⁾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없이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⁹⁾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8) 기획재정부는 19세~34세의 청년(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 총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9)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규모 재정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임.

* 지자체 재정자립도: ('20년)50.4% → ('24년)48.6%, 국고보조 대응지방비: ('20년)28.6조원 → ('24년)34.5조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⁰⁾

- 참고로, 이 법 제정 당시에도 심사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청년수당이나 청년생활금 지급 규정을 마련할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 둘째, 청년기본소득 도입 시 개정안에 따른 청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의 근로의욕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하여 자립수당,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청년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0) 이에 더하여, 서울특별시도 청년기본소득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현행과 같이 조례를 통한 사업추진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광주광역시도 지역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3